

수원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908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19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6. 5.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문기선

1. 목록

(건물의 표시)

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

건물내역: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오피스텔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소재지번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

지 목: 대

면 적: 125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:

건물내역: 라멘조 오피스텔 36.92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종류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1258분의 11

2. 청구원인

- 원고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 E 호의 임대인으로 2020.5.5일부터 임차인 C 과 보증금 오백만원(5,000,000원)과 월차임 사십만원(400,000원)을 매월 5일에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.
- 그런데, 계약 후 임차인 C 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월세가 연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(7개월연체, 4개월연체 등), 2021.5.4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.
- 계약기간 만료 후 2022.5.6일에 임차인이 미납된 7개월분 월세 입금하면서 3개월 거주연장 요청하므로 사정을 들어 주었으나, 2022.6.5일부터 2023.7.10일 현재까지 14개월분의 월세 미지급, 18개월분의 관리비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원고의 사위가 지속적으로 통화, 문자로 미지급 미납분 정산과 이사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, 2023.5.30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받지않고 있어 문자로 내용증명 전달하였고,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판결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